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2-0229호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안양시 고시 제2019-49('19.3.28)호, 제2019-209('19.11.01.)호, 제2020-205('20.10.23.)호, 제2021-253('21.10.28)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0-37('20.2.28)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이하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시행자	위치	면적(㎡)	사업기간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디엘이앤씨컨소시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9,122.4	2019년 ~ 72개월

2. 보상대상 물건조서 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	안양시 안양동	590-87
총계 : 토지 462.0㎡, 지장물 541.7㎡		
위 지번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지정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www.gh.or.kr(정보마당-보상정보)]에서 열람 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안내해 드리며 동 조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2. 6. 14.(화) ~6. 28.(화), 10:00~17:00(14일간)

※ 열람기간 중 토 · 일요일 · 공휴일 포함(경기주택도시공사 열람장소만 가능)

나. 열람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안양냉천 개발사업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 ☏ 070) 4256 - 3629

○ 안양시 도시정비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 031) 8045 - 5314
○ 안양시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7번길18(안양동)

다. 이의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안양냉천 개발사업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 ☏ 070) 4256-3629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동안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2년 9월 이후(추후 개별통지)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의 산정 및 지급 방법

가. 보상액 산정방법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규정」제21조 제5항 등에 따름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6. 보상 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토지보상법」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다.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라.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T : 070-4256-3629, F : 031-441-1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4.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디엘이앤씨컨소시엄